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8월호

1. 법률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상법
- 다. 상법 시행령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 가.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나. 금융투자업규정
- 다. 전자금융감독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자.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차.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 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파. 손해배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1. 법률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신설)
- 나. 상법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 다. 상법 시행령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발행 금지)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7/28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24호, 2026.2.3. 공포, 8.4. 시행)됨에 따라, 해당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할 때 신고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2) 주요 내용

-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제51조 신설)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 대상 기준 개선(제120조)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개정
 - (기존)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개정) '30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상향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의 비정형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정한 보도자료 및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나. 상법 (2026/7/22 개정 · 2026/7/23 시행)¹⁾

1) 개정 이유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의무선임 비율을 확대하며,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 해임 안건과 관련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 하는 등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 제2항 신설)

-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함
 - (기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

□ 독립이사의 선임(제542조의8)

-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기존) 4분의 1에서 (개정) 3분의 1로 상향 조정

□ 감사위원회의 구성(제542조의12)

- (개정)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선임 · 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
 - (기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 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 해임 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

□ 전자주주총회(제542조의14)

- (개정)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함

1)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4조, 제368조,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기존)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 상법 시행령 (2026/7/21 개정 · 2027/1/1 시행)²⁾

1) 개정 이유

- 「상법」 개정(2025.7.22. 공포, 2026.7.23. 및 2027.1.1. 시행)에 따라, 독립이사의 결격기간 정비 및 등기 근거 마련, 전자주주총회의 의무 개최 대상, 개최요건 및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발행 금지(제22조 및 제23조)
 -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의 발행 대상 주식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상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삭제
 -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에 따름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도입(제28조)
 - 종전에는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서면으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도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독립이사 결격기간 정비(제34조 제5항 제7호)
 -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독립이사의 결격기간으로 함
 -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6년을 초과
 -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는 경우
-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기 근거 마련(제34조의2 신설)
 - 상장회사가 독립이사를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독립이사’의 명칭으로 등기

2) 제3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호, 제34조의2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 시행하고,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시행

□ 전자주주총회의 의무 개최 대상 상장회사(제42조의2 신설)

-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함

□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제42조의3 신설)

-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전자주주총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직무 수행의 기준·절차 및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함

□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의 요건(제42조의6 신설)

- 상장회사의 위탁을 받아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및 사고 발생 시 업무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보완설비를 갖추도록 함

□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제42조의7 신설)

- 상장회사는 해당 상장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발언의 횟수·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방법(제42조의8 신설)

-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되, 이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회사가 마련한 방법에 따라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 가.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벤처투자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완화)
- 나. 금융투자업규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이행실적의 인정한도 설정)
- 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가맹점에 대한 위험 평가)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6/7/28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 중소 · 벤처기업의 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의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의 투자에 대해서는 공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 벤처투자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완화(제2-1조 제2항)
 - 벤처펀드와 집합투자기구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벤처펀드도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시켜 청약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투자조합

나. 금융투자업규정 (2026/7/8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 증권업의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의 이행실적에 대해 최대 인정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법체계의 정합성 및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심사요건을 타 업권과 일원화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고시 및 보도자료,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2) 주요 내용

□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규제(제3-6조, 제3-24조의5)

-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개념을 신설
 -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투자금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함
- 기존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 한도규제를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 규제로 개정

□ 부동산 PF 관련 총당금 적립 정비(제3-8조, 제3-24조의4)

-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총당금 적립률 차등 요인을 일부 삭제하여 적립률 상향 조정
 - (기존) 정산 분류자산 100분의 0.5 / 요주의 분류 자산 100분의 7
 - (개정) 정산 분류자산 100분의 0.5(다만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2) / 요주의 분류 자산 100분의 10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 위험값(제3-14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을 영업용 순자본 차감항목(위험값 100%)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부동산 위험액 산정기준(시행세칙 개정사항)에 따라 위험값 차등 적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이행실적의 인정한도 설정(제4-102조의10)

-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가액의 100분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으로 인정

□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 개선(별표 3 제1호 바목(3))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자격요건 적용배제

다. 전자금융감독규정 (2026/7/15 개정 · 시행)¹⁾

1) 개정 이유

1) 제56조의8 및 제5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및 점검을 통해 다단계 결제구조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하고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시점, 내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가맹점에 대한 위험 평가(제56조의8, 제56조의9)
 -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에 대해 계약체결시, 갱신시, 계약기간 중 위험평가
 -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 현황,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
 -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계약해지, 시정요구, 중도해지 등 조치
 - 해당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관한 기록을 평가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5년간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시점 및 내용을 명확화(제57조 제2항 및 제3항)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업자가 가맹점과 계약체결시, 갱신시,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시 가맹점 수수를 고지
 -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1월 전에 고지
 - 가맹수수료 고지시 결제수수료를 구분하여 고지
 - 이 경우 결제수수료란 전자금융결제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한국거래소 규정

-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 정비)
-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관리종목 지정 조치 등에 따른 세부 기준 및 상장 관련 실무 절차 정비)
- 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자기주식 공시 관련 사항 정비)
-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직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
- 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의 기본예탁금 요건 신설)
-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복수의결권 발행기업의 최대주주 관련 규정 적용기준 마련)
-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중복상장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명확화)
- 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기술성장기업 관련 공시의무 신설)
- 자.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공시위반 관련 실질심사 사유시 공시위원회 심의 대상 포함)
- 차.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식 분산의무 강화)
- 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지정자문인의 이전 상장 주선인 우선협상권 근거 마련)
- 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외환시장 거래시간 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문 정비)
- 파. 손해배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1)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가) 개정 이유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023.5.16.)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거래소가 추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PBR기업을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 정비(제18조, 제19조의2)

-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의결권 수를 고려한 최다의결권자 정의 신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주식의 의결권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최다의결권자라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특례

- 신규상장 및 합병상장과 관련하여 최다의결권자 및 그 특수관계인(최다의결권자등), 상장신청일 전 1년 이내 최다의결권자등이 소유한 주식을 취득한 자를 의무보유 대상으로 추가
- 단, 복수의결권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은 법률상 보통주식 전환 기한 또는 해당 주주의 보통주식 의무보유기간 까지로 설정
-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최다의결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신주를 취득한 자에게 6개월간 의무보유 근거 마련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시 비상장법인의 규모가 큰 경우 비상장법인이 충족해야하는 최대주주 요건을 최다의결권자에도 적용

□ 저PBR기업 기업가치 제고 관련 제도 정비(제157조의2)

— 저PBR기업 선정 및 공표 근거 마련

- 추가순자산비율이 2반기 연속으로 업종별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서 세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을 저PBR기업으로 선정·공표하는 근거 마련

2)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가) 개정 이유

- 중복상장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가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권상장법인의 의사사항 등을 신설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상장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상장 자회사를 상장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등을 우회상장 유형으로 추가하기 위함

—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026.3.18,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

나) 주요 내용

□ 종속회사등 상장시 주권상장법인 이사회의 의무 신설(제78조의2)

- 종속회사등 상장 추진시 주권상장법인 이사회는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 주주 보호방안 등에 관하여 주주와 소통하거나 주주총회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 주주 소통 결과 또는 주주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한 찬반의견을 결의하고 해당 찬반의견을 종속회사등에 통지하도록 의무화
- 한편, 주권상장법인 이사회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위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 위원장을 독립이사로 하고 2/3 이상을 독립이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에게 독립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자격요건 요구

□ 중복상장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한 우회상장 제도 정비(제37조)

- 중복상장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비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을 우회상장 유형으로 추가
 - 예를 들어, 상장회사의 비상장 종속회사와 상장 종속회사를 합병 등

□ 중복상장 규제 위반시 상장계약위약금 부과 근거 마련(제157조의3)

- 중복상장 관련 주권상장법인의 의무 미이행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억원 이내에서 상장계약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관련 규정 개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 종속회사등 상장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이사회의 의무 신설(제19조의2)
- 중복상장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상장 제도 정비(제33조 제3항)
- 중복상장 규제 위반시 상장계약위약금 부과근거 마련(제53조의2)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1)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가) 개정 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최근 관리종목 지정 조치 등 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 기준 및 상장심사 및 상장관리 효율화를 위해 실무 절차를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상장제도 정비(제19조의2, 별표 2의2)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특례
 - 자진상장폐지 및 의무보유 예외사유 적용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등에 최다의결권자 또는 최다의결권자등을 포함하여 적용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의 질적심사기준 정비 등
 - 복수의결권 발행의 적정성 여부 및 의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장치 마련 여부 등의 심사 근거 마련 및 그 밖의 내용·서식 정비
- 상장 관련 실무 절차 정비(제28조 제8항, 제126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51조 제1항, 별표 1, 별표 7)
 - 부실기업 퇴출기준 강화 관련 상장규정 개정(2026.7.1. 시행)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절차 등 정비
 - 시가총액 미달 사유 및 주가 미달 사유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해제 시기 명확화
 - 시가총액 미달 사유 및 주가 미달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점을 45일 계속 요건을 달성하기 불가능해진 시점으로 명확화
 - 관리종목 해제 기준을 미충족한 상황에서 46일째 장종료후 시가총액 및 주가가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익일 부터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한 거래 정지
 - 상장심사 및 상장관리 효율화를 위한 실무 절차 등 정비
 - 애프터마켓 개설에 따라 거래량 미달 사유의 원활한 조치를 위해 반기 마지막 거래일의 경우 장종료시(15:30) 까지의 거래량만 포함하여 산출
 - 애프터마켓 20시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애프터마켓 거래량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당일 내 관리종목 지정 조치가 어려운 문제 발생
 - 지주회사 및 외국지주회사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영향이 크지 않은 자회사에 대한 서류 제출 간소화
- 저PBR기업 선정 비율 구체화(제127조의2)
 - 상장규정에서 위임한 저PBR기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함
- 조문정비(제48조 제9항·제12항, 제50조 제1항, 부칙 제2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시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1년)과 관련하여 시행시기 기준 명확화
 - 공시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판단시 누계벌점 산정기준 명확화
 - 반기 자본잠식, 분기 매출액 미달 관련 실질심사 사유 판단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화

2)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가) 개정 이유

- 중복상장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복상장 모회사 의무 위반시 상장계약위약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중복상장 심사대상 명확화(제70조의3)

- 중복상장 심사대상을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속회사 및 계열회사 중 수직적 지배관계가 있는 회사로 규정
 - 외부감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

□ 중복상장 심사기준 구체화(별표 2의2 제3호 가목)

-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심사기준을 구체화
- 물적분할 자회사, 일반 자회사, 저비중 자회사를 구분하여 투자자 보호 심사기준(주주 보호 노력) 적용
 - (물적분할 자회사)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 동의를 의무화
 - (일반 자회사) 주주 보호 노력 이행 여부를 심사하되, 모회사 주주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한 것으로 추정
 - (저비중 자회사) 모회사가 주주영향 평가, 주주 보호방안 마련 등 절차에 관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주주 보호 노력 이행 여부 심사를 면제
 - 자산·매출·영업이익 비중이 모두 10% 미만인 자회사. 기업가치 등을 고려할 때 거래소가 주주 보호 노력 이행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가치 비중도 추가심사 가능

□ 중복상장 모회사 의무 위반에 따른 상장계약위약금 부과 기준 및 매매거래정지 근거 등 마련(제126조, 제127조의3, 별표 12, 별지 제4호2 서식, 별지 제37호 서식)

-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약금 부과금약 기준을 정하고 위반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부과금약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상장계약위약금 부과시 1일간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1)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가) 개정 이유

- 「상법」 (2026.3.6.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4.12.31.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공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반기 자본 전액잠식 관련 공시의무를 부과하기 위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복수의결권 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사유 발생시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공시의무를 삭제하고,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불성실공시 적용기준을 정비(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3))
 - 「상법」에서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이 금지됨에 따라 이러한 방식의 자기주식 처분을 공시의무에서 제외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시 관리 기준을 수량에서 금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시변경 기준도 정비
 - 신고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미달하여 취득·처분 등 경우 제재
- 최근 반기말 자본 전액잠식시 공시의무 신설(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 (2))
 - 최근 반기말 기준 자본 전액잠식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2026.5.13. 상장규정 개정)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시의무 신설(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7))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사유 발생시 공시

2)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가) 개정 이유

- 상장법인에 대해 중복상장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종속회사등 상장 관련 공시의무 신설(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8))
 - 종속회사등 상장시 주주영향 평가 및 찬반의견 등을 결의한 경우 공시
 -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하여 공시

3) 관련 규정 개정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공시의무를 삭제(제6조 제2호 다목)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시의무 신설(제6조 제6호 마목)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 자기주식 취득 · 처분 관련 불성실공시 적용기준을 정비(제11조 제3호)

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1) 개정 이유

- 「상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직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제39조 제1항)
 - 「상법」 개정 및 이를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규장을 통한 자기주식의 처분이 불가하므로, 관련 매도 호가가격범위 조항 삭제
 -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균등처분 또는 제한된 사유(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또는 경영상 목적 활용 등)에 의한 제3자처분만 가능(상법 제342조)
 - 정규장에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문방법 등 세부 규정을 삭제(증발공 규정 제 5-9조 제5항)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을 통한 간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제35조 제6항, 제41조, 제80조 제1항)
 -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신탁업자는 신탁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처분이 불가하므로, 관련 정규장 · 시간외시장(대량매매)에서의 자기주식신탁매도 근거 규정을 삭제
 -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는 장내·장외 처분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계약종료·해지시 상장법인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4)

[장내 자기주식 처분 관련 개정사항]

구분		기존		개정
정규 시장	상장법인 직접 매도	가능	⇒	불가(제39조 제1항)
	신탁회사를 통한 간접 매도			불가(제41조, 제80조 제1항)
시간외 시장	상장법인 직접 매도	가능		제한적 가능(제39조 제4항 제3호)
	신탁회사를 통한 간접 매도			불가(제35조 제6항, 제41조, 제80조 제1항)

3) 관련 규정 개정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7/2 개정 ·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직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제14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을 통한 간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제9조의3 제1항, 제52조 제9항, 제59조, 제107조)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직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제10조 제1항·제5항)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을 통한 간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제12조, 제36조 제1항)
- 기타 조문 정비(제10조 제2항 · 제4항 · 제6항, 제36조 제1항 · 제3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직접 매도 관련 사항 정비(제10조)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을 통한 간접 매도 관련 사항 정비(제7조의2, 제12조)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직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제14조 제1항 · 제5항)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을 통한 간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제16조, 제54조 제1항)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직접 매도 관련 사항 정비(제19조)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을 통한 간접 매도 관련 사항 정비(제8조, 제21조)

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7/30 개정 · 2026/7/31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원회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2026.7.16.)의 일환으로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 상장지수증권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의 기본예탁금 요건 신설(제111조의3)

-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 이상(현금에 한함)으로 하고, 대용증권을 미인정
 - 거래경험 등에 따른 완화를 금지하기 위하여 위탁자별 구분을 두지 않음

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1) 개정 이유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저PBR기업 선정 및 공표 근거 마련 및 특례상장기업 정보 제공 · 상장관리 강화 등 코스닥시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최다의결권보유자 정의 신설 및 용어 정비 등(제2조)
 -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의 경우 의결권 수를 고려한 최다의결권자 정의를 신설
 - 보통주식 및 의무보유 정의 내용을 정비
- 복수의결권 발행기업의 최대주주 관련 규정 적용기준 마련(제3조의2)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에서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최대주주 관련 규정을 최다의결권자에도 적용
- 복수의결권주식의 의무보유 사항 및 기타 정비(제26조, 제31조, 제50조, 제77조)
 -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의무보유 근거 및 기간 규정을 마련하고 최다의결권자가 지분 100분의 30 이상 보유시 코넥스 신속 이전기업 특례(경영안정성 심사 면제)를 적용
 - 법률상 보통주식 전환 기한 또는 해당 주주의 타 보통주식 의무보유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 저PBR기업 선정 및 공표 근거 마련(제47조의2)
 - 추가순자산비율이 2반기 연속으로 업종별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서 세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을 저PBR기업으로 선정 · 공표하되, 세부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함
- 특례상장기업 정보제공 · 상장관리 강화(제53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56조 제1항 제6호의2)
 - 특례상장기업의 매출액 미달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면제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조건부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척 개정을 위한 위임 근거 마련
 - 기술성장기업이 공시규정에 따라 정관 변경을 통한 사업목적 추가 · 변경을 공시한 경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신설

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1)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가) 개정 이유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026.3.18.),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2025.12.19.),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후속 조치로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 신설(제8조의2, 제61조 제1항 제6호, 별표 6)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의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른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최대주주 관련 규정을 최다의결권자에게도 적용
 - 최다의결권자와 최대주주의 지위가 상호 변경된 경우를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해당하는 최대주주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
 - 복수의결권 발행의 적정성 여부 및 의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심사 근거 마련
- 저PBR기업 선정 비율 구체화(제43조의2)
- 상장규정에서 위임한 저PBR기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함
- 특례상장기업 정보제공 · 상장관리 강화(제4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4호의2)
- 특례상장기업(기술성장기업·이익미실현기업)의 매출액 미달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면제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조건부로 적용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6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제21호에 따른 자율공시
 - 해당 조항의 개정된 부분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법인부터 적용
 - 기술성장기업 공시한 경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신설
- 시가총액 · 주가 미달 관리종목 적용방법 · 해제시기 정비(제51조, 별표 10)
- 시가총액 · 주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해제시기를 45 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 주가 기준 이상이 된 거래일의 다음날로 규정
 - 주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적용시 종가가 없는 경우, 시가총액 미달 적용방법과 동일하게 해당 종목의 당일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가격(코스닥시장 업무 규정 제2조 제16항)

- 시가총액·주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명확화

□ 혁신기업을 위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 확대(별표 7의 제6호·제7호·제8호)

-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산업 맞춤형 질적심사기준 마련

□ 외국기업·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 필수 기재사항 정비(별표 12·13)

□ 상법 개정(2025.7.22. 일부개정, 시행일 2026.7.23.)에 따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의무 선임 비율 요건 강화를 외국기업·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 필수 기재사항에 반영

-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 → (개정) 이사 총수의 3분의 1

□ 기타 개정

- 반기·분기 재무사항 기준으로 판단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실질심사 사유의 판단 기준 명확화(제48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제10호)
- 거래량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변경(제54조 제1항)

2) 2026/7/31 개정·2026/8/3 시행

가) 개정 이유

- 중복상장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복상장 모회사 의무 위반시 상장 계약위약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중복상장 심사대상 명확화(제20조의2)

- 중복상장 심사대상을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속회사 및 계열회사 중 수직적 지배관계가 있는 회사로 규정
 - 외부감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

□ 중복상장 심사기준 마련(별표 6 제3호의2)

- 중복상장의 경우 질적심사기준의 특례로서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심사기준을 마련

- 투자자 보호에 대한 심사기준(주주 보호 노력)을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일반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저비중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로 구별하여 규정
 -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의무화
 - 일반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는 주주 보호 노력 이행 여부를 심사하되, 모회사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한 것으로 추정
 - 저비중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는 모회사가 주주영향 평가, 주주 보호방안 마련 등 절차에 관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주주 보호 노력 이행 여부 심사를 면제
 - 저비중 자회사는 자산·매출·영업이익 비중이 모두 10% 미만인 자회사로 기업가치 등을 고려할 때 거래소가 주주 보호 노력 이행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가치 비중도 추가심사 가능
- 중복상장 관련 모회사의 의무 위반에 따른 상장계약 위약금 부과 기준 및 매매거래정지 근거 등 마련(제19조 제1항 제3호, 제58조의2, 별표 15, 별지 제28호의2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
 -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약금 부과금액 기준을 정하고 위반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부과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상장계약 위약금 부과시 1일간 거래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1)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가) 개정 이유

-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상장관리를 위해 기술성장기업이 특례기간내에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상법」 등 개정에 따라 공시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기술성장기업 관련 공시의무 신설(제6조 제1항 제1호 사목)
 - 기술성장기업이 특례기간(5년) 중 사업목적 추가 ·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결의 시 공시의무 부과
-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공시의무를 삭제하고, 자기주식 취득 · 처분 관련 불성실공시 적용기준을 정비(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 (3))
 - 「상법」에서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이 금지됨에 따라 이러한 방식의 자기주식 처분을 공시의무에서 제외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시 관리 기준을 수량에서 금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시변경 기준도 정비
 - 신고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미달하여 취득·처분 등 경우 제재

☐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시의무 신설(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1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사유 발생시 공시

2) 2026/7/31 개정 · 2026/8/3 시행

가) 개정 이유

- ☐ 상장법인에 대해 중복상장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부과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종속회사등 상장 관련 공시의무 신설(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11))

- 종속회사등 상장시, 주주영향 평가 및 찬반의견 등을 결의한 경우 공시
-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하여 공시

자.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6/7/2 개정 · 2026/7/3 시행)

1) 개정 이유

- ☐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금융위 등) 후속 조치로서 공시위반과 관련된 실질심사 개시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비하기 위함
- 벌점요건 하향(15점 → 10점), 고의이면서 중대한 공시위반요건 신설

2) 주요 내용

- ☐ 해당 불성실공시가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제15조)
-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위반의 동기가 고의이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시위반 관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중인 상장법인은 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차.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2026/7/1 개정 · 2026/7/1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의 주식 분산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함
 - ‘위기에 강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026.3.18,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

2) 주요 내용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식 분산의무 강화(제28조 제1항)
 - 상장폐지 사유 중 분산요건 미달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사의무 주식 비율을 상장 후 경과기관에 따라 세척에서 정하는 수량까지 점차 확대(최대 100분의 15)하고, 분산주주 수 요건을 신설
 - (기존) 상장 1년 이후부터 분산주식 비중 100분의 5 유지, 분산주주 수 요건 없음
 - (개정) 상장 연차별로 분산주식 비중 유지의무 강화, 분산주주 수 요건 신설

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6/7/1 개정 · 2026/7/2 시행)

1) 개정 이유

- 코넥스시장의 주식 분산의무 단계적 강화 및 지정자문인의 이전상장 주선인 우선협상권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위기에 강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026.3.18,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

2) 주요 내용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식 분산의무 강화(제24조의2 제1항, 제2항)
 - 상장폐지 사유 중 분산요건 미달과 관련하여 상장연차별로 분산요건을 점차 상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분산주주 수를 확보

구 분	현 행	변 경
분산의무 지분율	(1년 경과) 100분의 5	(1년 경과) 100분의 5 (2년 경과) 100분의 10 (3년 경과) 100분의 15
분산주주 수	-	(1년 경과) 50명

- 지정자문인의 이전상장 주선인 우선협상권 근거 마련(제3조 제2항)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시 지정자문인에게 이전상장 주선 관련 우선협상권을 부여
 - 다만, 지정자문인이 상장주선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

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7/6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24시간 체제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서울외환시장 거래시간 변경]

기존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개정 (2026.7.6.시행)	① 뉴욕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 기간 -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② 그 외 기간 -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③ 1월 1일만 휴장(한국 공휴일은 개정) ④ 매년 첫 영업일은 9:00 개장 ⑤ 매년 마지막 영업일은 24:00 폐장

* 서울외환시장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원화와 미달러화간 거래시간만 변경

2) 주요 내용

- 사용 환율 시점 명확화(제47조의7, 별표 1)
 -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 산출에 사용하는 미국달러현물환율 체결건수 산정시간을 당일 9시로 명시
 - 기초자산기준가격 산출에 사용하는 환율 표현을 환율 고시기관과 일치시켜 당일 15시 30분의 미국달러현물환율로 명시
 - 미국달러선물거래,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및 통화옵션거래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현물가격 기준 정비(제72조의3)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인수도결제금액 산출에 사용하는 미국달러현물가격의 기준을 당일 정규거래 개시 이후에 형성된 환율로 확대

파. 손해배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2026/7/1 제정 · 시행)

1) 제정 이유

- 거래소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 범위와 절차를 심의하기 위한 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손해배상 심의 대상의 정의(제2조)
 - 각 상장증권 및 상품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등 거래소의 시장조치 또는 전산장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로 그 배상 심의 대상을 정의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회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은 위원장과 시장, 소비자보호, 법률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경영지원본부장이 위촉
 - 위원회간사는 리스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함
- 위원회의 운영(제4조 및 제5조)
 - 위원회는 손해배상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
 - 배상기준의 적정성, 대상자와 손해액 등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 안건은 회의 소집 3일 전까지 통지하고, 속행의 경우 1개월 이내 소집
- 경비지급 근거 마련 및 의사록 작성(제7조 및 제8조)
 - 위원의 경비지급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지급 지침' 준용
 - 각 심의관련 의사록 작성 및 비공개가 원칙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의 기본 예탁금 상향)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6/7/30 개정 · 2026/7/31 시행)

1) 개정 이유

-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의 기본 예탁금 상향 등을 추진하기 위함
 - 금융위원회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2026.7.16.)의 일환

2) 주요 내용

-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 투자시에도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과 동일하게 ‘기본예탁금 3,000만원, 대용증권 미인정’ 등을 적용(제4-13조)
 - 거래경험 등에 따른 기본예탁금 완화 제한
 -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의 기본예탁금 내용은 한국거래소 규정 준용
 - 단, 대용증권 미인정 등 추후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인한 준용 문구 변경 필요시 금융투자협회 「이사회운영규정」 제13조 제2호에 근거하여 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예정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